

의안번호	2219019
의 퇴 인	양부남의원
회 답 일	2026.8.13.
추계번호	26D264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그 배우자에게 승계하여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8,485억원, 2032년 9,340억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4조 4,568억원(연평균 8,914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안 제6조제3항 신설)	8,485	8,713	8,887	9,143	9,340	44,568	8,914

주: 1.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안 제6조제3항 신설)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배우자 수를 무궁수훈자의 유배우자 및 배우자 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제1항),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제3항 신설) ※개정안 부칙에서는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	의무규정
2	안 제8조(양로지원)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	-
2	안 제8조(양로지원)	-	양로지원 시설로 수원 보훈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 인원과 상관없이 매년 보훈원에 양로지원 사업비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는 없음 참고로, 2026년 보훈원 양로지원 사업에 35억 4,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양로지원의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 개정안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승계 대상자 수는 참전명예수당을 수급 중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 전체로 산정
 -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안 제6조제3항제1호)와 참전유공자가 65세 전에 사망한 경우(안 제6조제3항제2호)를 구분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승계 대상자는 ①현재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②65세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그리고 ③기준에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였으나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다만,본 추계에서는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한하여 배우자 승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현행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이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제한이 있어 65세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수, 그리고 기준에 수급자였으나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존 배우자 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는 무공수훈자 최근 3년 평균 유배우자율 72.1%를, 배우자의 사망률은 무공수훈자 배우자의 최근 3년 평균 사망률 8.1%를 적용하여 추정
 - 개정안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전유공자 본인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참전명예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
- 본 추계는 참전명예수당 승계 대상자 수,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 (승계 대상자 수) 2028년 126,266명, 2032년 105,179명으로 추정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는 2025년 연말 기준 10만 8,909명이며, 최근 5년(2021~2025년)간 연평균 9.4% 감소

[표 2]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현황: 2021~2025년

						(단위: 명, %)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증감률
수급자	161,577	146,932	132,479	120,190	108,909	-9.4

자료: 국가보훈부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9.4%를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 추정: 2028~2032년

					(단위: 명, %)
	2028	2029	2030	2031	2032
수급자	80,994	73,381	66,483	60,234	54,57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가 감소한 만큼 참전유공자 사망자 수로 가정하고, 사망자 수에 유배우자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신규 수권 배우자 수를 추정
- 전년도 수권 배우자 수 누계에 (1-배우자사망률)을 곱한 값에 당해연도 신규 수권 배우자 수를 더하여 당해연도 수권 배우자 수 누계를 추정
- 참전유공자 유배우자율은 무공수훈자 최근 3년 평균 유배우자율 72.1%, 배우자의 사망률은 최근 3년 무공수훈자 배우자 사망률 8.1%를 적용함

[표 4] 참전명예수당 승계 대상자 수 추정: 2028~2032년

(단위: 명)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전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80,994	73,381	66,483	60,234	54,572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자 수(A)	7,613	6,898	6,249	5,662	5,130
신규 수권 배우자 발생자 수 ($B=A \times \text{유배우자율}$)	5,489	4,973	4,506	4,082	3,699
누적 수권 배우자 수 ($C_t = C_{t-1} \times (1 - \text{사망률}) + B$)	126,266	121,011	115,715	110,424	105,179

주: 1.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자 수는 해당연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에서 다음 연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를 차감하여 산출함

2. 누적 수권 배우자 수는 2023년 국가보훈부가 추정한 기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 149,548명을 기준으로 무공수훈자 최근 3년 평균 유배우자율 72.1% 및 최근 3년 무공수훈자 배우자 사망률 8.1%를 적용하여 추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월지급액) 2028년 56만원, 2032년 74만원으로 추정

- 최근 5년(2021~2025년)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표 5]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 현황: 2021~2025년

(단위: 만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증가율
월지급액	34	35	39	42	45	7.3

자료: 국가보훈부

- 추계기간 동안 참전명예수당은 최근 5년(2021~2025년) 연평균증가율 7.3%에 따라 상승

[표 6]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 추정: 2028~2032년

(단위: 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월지급액	56	60	64	69	74

주: 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실제 계산결과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여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8,485억원, 2032년 9,340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4조 4,568억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승계 대상자 수(A, 명)	126,266	121,011	115,715	110,424	105,179	—
월 지급액(B, 만원)	56	60	64	69	74	—
추가재정소요(=A×B×12개월, 억원)	8,485	8,713	8,887	9,143	9,340	44,568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배우자 수를 무공수훈자의 유배우자율 및 배우자 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